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4328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준혁, 김대성(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배형근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7. 선고 2024고단2602, 2025고단141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7억 8,000만 원 가량은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나 도박 등에 탕진하였고, 일부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F,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5,150만 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_____

 판사 권재호 _____

 판사 김배현 _____